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요금감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('21.10.19)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등(안 제6조의2 신설)

- 1)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가입자 정보를 유관시스템과 연계·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“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”할 수 있도록 함
- 2) 감면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3) 요금감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”하도록 함
- 4)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5)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정보 변경시 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 하도록 함
- 6) 전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분담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기통신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연계·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에게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의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감면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

제공하도록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 하여야 한다.

⑥ 전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분담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6조의2(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제2조제2항 제3호의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연계·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에게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의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감면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		

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.

⑥ 전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분담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43